

### <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특별 시행세칙>

#### <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특별 시행세칙>

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특별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~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문가 자격증 수여를 위해 시행한다.

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최상위 자격 취득 이후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실무경력 최소 5년 이상인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1) 본 학회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로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.

가)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

나)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(구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숍을 주도하는 것

다)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 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. 단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 교육 참석으로 대체 가능

\* 외부 교육은 주최하는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의미한다

라) 라)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를 대표저자/역자로서 출판하는 것(출판물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)

마) 마) 전문학술지에 제 1저자나 교신 저자로 인지치료, 인지행동치료, 마음 챙김 기반 연구 및 치료 (MBCT, ACT, DBT, MBSR, CFT 등) 논문 2편 이상 게재하는 것.

2) 대학교 또는 수련병원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강의를 2학기 이상 하거나 전공의 및 수련생 대상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을 1년 이상 제공한 자로 이에 대한 증명서 (강의계획서, 병원 과장 확인서, 학과장 확인서, 학회장 확인서 등의 공식 문서)를 제출하는 자.

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로부터 추천서 2부를 제출한 자

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. 단, 면접시험은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실무 경력에 관한 것이며 자격심사 및 면접 시험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